

〈논 문〉

## 過勞死의 認定基準에 관한 判例의 傾向

李 興 在\*

### I. 서론

과로사는 엄격한 의미에서 법률상 개념이 아니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자신의 체력을 모두 소진해 버리는 상태가 되어 사망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과로사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나 과로사는 노동의 질적 변화와 생산관리 및 노동밀도의 강화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이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외부적 원인이 작용한 사고성 재해로서의 돌연사나 특정 업무의 유해인자와 질병의 관련성이 밝혀진 직업병으로서의 사망과는 구분되지만 또한 이들 요소가 과로와 결합된 ‘중첩적 제 3의 유형’인 업무상 재해로서의 특징이 있다. 특히 과로사는 피해자인 근로자 개인의 체질 및 병적 소인에 따른 구체적 주관적인 차별성과 기존질병의 관련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과로의 원인 제공이 업무상 생활영역인지 사적 생활영역인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과연 이를 어떠한 기준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정책에 의해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근래에 접어들어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으로 청장년급사증 후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현대 자본주의가 경쟁원리에 입각한 강도 높은 노동통제 방식과 더불어 유연성 생산방식에 따른 근로형태의 변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노동통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과로사의 법률적 개념과 그 성격 및 구조를 밝히고 이에 대한 사회보장법 차원의 보호법리를 정립할

---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教授

현실적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과로사의 사회보장법적 보호원리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먼저 판례의 과로사에 대한 인정기준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그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는 데에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판례는 과로사의 인정기준을 검토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일부 하급심 판례로 그 범위를 한정하며 또한 그 연구방법은 주로 판례요지를 쟁점별로 정리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로사의 판단에 관한 판례의 일반기준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으로 이를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부인하는 기준을 차례로 고찰한 뒤에 마지막으로 판례의 경향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

## II. 과로사의 판단에 관한 판례의 일반기준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과로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 즉 업무기인성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과로사의 특수한 성격상 업무수행성은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라도 업무수행성은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업무수행성의 판단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서 업무기인성의 판단기준을 고찰한 뒤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sup>1)</sup>

### 1. 업무수행성의 판단기준

#### (1)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인 경우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1) 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개념도구를 그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기존의 질병이 주요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가 사고의 결과라기 보다는 기존의 개인의 질병을 보다 본질적인 원인으로 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잠재해 있던 질병이 유발된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발생구조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산업재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논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법상 책임확정에 관한 이론인 책임설정적 인과관계 및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라는 개념도구를 빌려서 산업재해의 발생구조를 분석”해 보려는 주목할 견해가 주장되고 있지만 이 곳에서는 이 연구의 성격상 종래 법원이 사용하는 개념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 제 2판, 법문사(1999), 337-341쪽 참조.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4751 판결)라고 하여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속히 악화된데다가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

### (2) 휴식 중에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할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 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9.10. 선고 91누5433 판결)라고 하여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의 과로원인이 되어 공장사무실에서 잠자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였다.

### (3)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할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7935 판결)라고 하여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인해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였다.

## 2. 업무기인성의 판단기준

### (1) 인과관계의 존재와 그 입증부담자 및 입증의 정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1996.9.10. 선고 96누6806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7935 판결). 업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위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감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3656 판결).

#### (2)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과로의 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 (3)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인과관계의 판단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 (4) 과로 이외의 원인의 경합

##### 1) 음주행위

##### (i) 인과관계를 인정한 경우

i) 망인은 평소 심관상동맥경화증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된 그것이 유인이 되어 급사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에 합당하다 하겠고, 사고 전날 음주를 하여 그것이 다소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업무상의 과로로 인한 사망임을 좌우할 만한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11.26. 선고 92구6176 판결).

ii)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가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2642 판결).

iii) 망인은 음주보다는 그의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그 어떠한 질병을 급속히 유발 또는 악화시켜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2.14. 선고 94구3614 판결)

#### (ii) 인과관계를 부정한 경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가 간경화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위 간경화를 자연적인 진행정도보다 더 빨리 악화시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 오히려 1992년 건강진단에서 간질환관계의 정상관정을 받은 이후 위 망인이 건강에 조심함이 없이 다시 과도하게 음주를 계속함으로써 완치되지 아니하였던 위 알코올성간질환이 계속 진행되어 간경변으로까지 악화되었고 급기야는 이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대법원 1995.3.21. 선고 94구3683 판결).

#### 2) 시설물의 관리소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 3) 복합적 원인의 경합

근로자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 (5)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 3. 판례의 경향에 대한 검토

과로사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일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과로사의 인정에 있어서는 사고성 재해의 경우와는 달리 업무기인성의 판단이 제 일차적 기준이 되므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업무수행성은 추정된다.<sup>2)</sup> 따라서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sup>3)</sup>

둘째, 판례는 업무기인성 판단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구체적 의미는 통일적이지 않고 크게 보아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업무상 과로의 정도(사망의 원인에 기여한 정도)를 달리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첫 번째 범주는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로가 사망의 공동원인 내지 조건적 원인이 되면 생활보장의 법리에 근거하여 과로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두 번째 범주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과로가 과중부하의 법리에 의하여 사망의 상대적 유력원인이 되어야만 과로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sup>4)</sup>

셋째, 인과관계의 입증의 정도에 대하여 판례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2)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동일한 취지의 견해가 있다.“그러나 업무수행성이 없더라도 업무기인성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예컨대 직업병이나 과로사의 경우가 그러하다.” 임종률, **노동법** : 제2판, 박영사(2000), 445-446쪽.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도 판례와 같은 입장이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또한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I.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부분 참조)

4)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는 달리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공동원인설로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 든다. 그 주장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병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따로 있고 과로는 간접 부수적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공동원인설’의 입장에 있다고 보인다. 결국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위와 같이 공동원인설을 취하여 실질적으로 그 인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나아가고 있는바 산재보상제도의 입법취지나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려는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인과관계 이론도 산재인정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도명(연구책임자),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관 및 심장질환을 중심으로(최종보고서), 1996, 35쪽.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피재자 보호를 위한 규범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탄력적 유연성을 폭넓게 열어 놓고 있다.<sup>5)</sup> 또한 판례는 입증의 부담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측에 지우고 있지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피재자의 주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Ⅲ.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기준

업무와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과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질병은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간 질환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 과로사 인정사례 중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먼저 과로사를 인정한 판례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질환별로 살펴보고 나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하여 보기로 한다.

#### 1. 판례의 구체적 인정기준

##### (1) 뇌혈관계 질환

###### 1)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전부터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6553 판결).

###### 2) 고혈압증세를 가진 자가 계속 과로한 경우

(i)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이 원래는 건강하였으나 격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고혈압증세를 가지게 되고 계속되는 과로로 뇌경색증이 발병된 경우는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10015 판결).

(ii) 고혈압 증세가 있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긴 후 철선재료 건조작업을 함에 있어 환기시설이 없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며 2교대 근무로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되는 데다가 월 2회의 철야작업과 월 2회의 일요일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5)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 제 4판, 법문사(2000), 290쪽.

람에 그 증세가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증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

### 3)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뇌교출혈로 사망한 경우

식당조리원의 근무수행중 계속적인 심한 과로가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지만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사망원인인 뇌교출혈의 발생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5819 판결)

### 4) 영업용 택시기사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영업용 택시 기사가 격일근무교대제 아래에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며 과중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그 택시기사의 그러한 과로는 뇌지주막하의 출혈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택시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5구27044 판결 : 확정).

## (2) 심장질환

### 1)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과로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되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 11424 판결).

### 2) 휴일 및 연장근무를 반복하던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작업상황을 점검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여 온 직물공장의 근로자가 제품 출고를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현기증, 두통, 얼굴 변색 등의 증상이 나타나 휴식을 취하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관상동맥경화증의 악화 또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대법원 1996.9.10. 선고 96누6806판결).

### 3)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피로가 축적되어 급성심장사 한 경우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



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원인이 될만한 다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9.10. 선고 91누5433 판결).

4) 낙도국민학교 교장이 과로로 인해 목욕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건강하게 일해 왔던 공무원이 한해 동안 낙도국민학교 교장으로서의 통상의 업무 이외에도 학교급식소 건축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병원진단을 받으러 육지로 나와 병원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8586 판결)

5) 버스운전사가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해 운전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버스운전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3일을 연속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한 뒤 다시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690).

6) 부정맥 내지 부전증으로 인한 돌연사

(i) 업무상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사성 부정맥이 초래되어 돌연사 하게 되었다고 보아 그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서울고법 1997. 2. 14. 선고 96구12407 판결 : 확정).

(ii) 근로자가 관상동맥 회선지 형성 부전증이라는 선천성 이상을 가진 상태에서 입사 이래 재해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과 출하 업무 및 잡일 등을 번갈아 해야 하는 등 업무 내용이 고정되지도 아니하고 비교적 힘든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피로 회복이나 휴식이 쉽지 아니한 회사 내의 임시 숙소에서 기거하여 와 피로가 누적되어 오다가, 사고 당시 업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복으로 갈아 입으려 기숙사로 들어가던 중 순간적으로 그 선천성 이상이 심장성 돌연사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6. 11. 15. 선고 96구8354 판결 : 확정).

7) 해외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등으로 인해 심근경색과열로 사망한 경우

국외 근무 근로자가 음주 후 수면중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과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빈번한 연장근무,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현지 근로자들과의 잦은 마찰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

로가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과열 등 심장질환을 유발·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구고법 1998. 10. 29. 선고 98누251 판결 : 상고)

### (3) 간 질환

#### 1) 간염 이환자가 업무상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i)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가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ii)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경우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대법원 1997.5.28. 선고 97누10 판결).

#### 2) 만성간질환자가 과로의 누적으로 인해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 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4751 판결).

#### 3) 과로가 기존의 간경화증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회사 세무담당자의 수일간의 출장 등 종합세무감사 수감업무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간경화증이 있던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과로가 간경화증을 악화시켜 발생한 상부위장관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3727 판결)

### (4) 폐질환

#### 1) 폐 절제수술을 받은 공무원이 누적된 피로로 인해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이 폐결핵의 치료를 위하여 폐 절제수술까지 받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00군 가정복지계의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출장근무 및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무가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결핵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19030 판결)

#### 2) 폐렴에 감염된 자가 숙직근무 후 폐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인플루엔자 폐렴에 감염된 소외 근로자의 숙직 전날이 감사기간이라 불가피하게 숙직근무를 하여야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하고도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숙직근무를 마친 후에야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폐렴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위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1997.12.9. 선고 96구5607 판결 : 상고)

#### (5) 호흡부전증

기관지천식이라는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닌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그 교사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로의 누적과 전시회의 준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기관지천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 (6) 폐혈증

망인은 폐혈증 발병 직전까지 상당기간 계속하여 시간외 근무 등 공무수행을 하면서 평소보다 과로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기존질병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폐혈증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폐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적인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폐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7.24. 선고 92누5335 판결)

#### (7) 청장년급사증후군

면사무소 지방행정서기로 형사 및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밀린 공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병력소집통지서 교부, 제1국민역 실시조사, 신규민방위대원 훈련통지서 교부 등 과중한 업무로 과로한 상태에서 비오는 날 통지서 교부 업무를 하던 중 이장이 건네준 소주 한잔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마시자마자 갑자기 뒤로 넘어져 사망한 경우에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2243 판결)

#### (8) 과로로 인한 통근재해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출근시부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의무를 정한 단체협약 규정상의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유추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지법 1999. 6. 8. 선고 98가합79650 판결 : 확정).

#### (9) 과로와 다른 원인의 경합

측두엽성 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 2. 판례의 경향에 대한 검토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상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판례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이 통일적이지 않고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범위의 두 가지 큰 범주 즉 뇌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 간 질환과 폐 질환 및 호흡 부전증에 따라 그 판단기준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나 하는 점이다. 먼저 뇌혈관 질환 및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가 사망을 직접 유발, 촉진시키거나 또는 기존질병에 겹쳐 사망의 원인'이 되면 폭넓게 과로사를 인정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이 과로를 사망의 공동원인으로 보는 것 같다. 다음으로 간 질환과 폐 질환 등의 경우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면 과로사를 인정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은 과중부하의 범리에 의

하여 과로를 사망의 상대적 유력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법원이 과로와 간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간암의 과로사를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 밖의 다른 하나의 범주로서 과로가 다른 원인과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과로를 사망의 공동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sup>6)</sup>

둘째, 판례가 공무원의 패혈증과 청장년급사증후군에 대하여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공무상 재해로 본 것은 그 판단기준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비하여 통일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전향적 목표를 제시하는 하나의 표석이라고 보여진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인이 불분명한 청장년급사증후군과 주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하여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근로자의 판단기준과는 달리 판례는 공무원의 패혈증에 관하여 ‘패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지속적인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의 청장년급사증후군에 대하여 그 직접 사인은 불분명하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의 태도이다.

셋째,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서울 지방법원이 근로자가 야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과로로 인한 통근재해를 인정한 것은 대법원과는 그 입장을 달리한 획기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새벽까지 계속된 6시간 30분 가량의 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283 판결<sup>7)</sup>)’고 판단한데 비하여, 서울 지방법원

6) 업무상 과로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제 3의 견해로, “산재인정을 넓히려는 입장에서 산재보상제도에 있어서 ‘업무상’ 판단은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발병과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한 입장이 있다. 김진국, “과로사와 기업책임”, **노동법연구** : 제5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1996), 61쪽.

7) 이 사건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통상근무를 한데 이어 그 다음날 02:30경까지 계속된 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던 중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마주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증상을 입었다면, 이는 근로자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은 비슷한 사안의 경우에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지법 1999. 6. 8. 선고 98가합79650 판결 : 확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 IV.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판단기준

업무상 과로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중 다수는 현대의학상 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특히 과로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의 경우(위암, 폐암, 버거씨병 등)가 많다. 즉 일반적으로 막연히 과로가 만병의 근원이라든가 과로가 신체의 저항력을 약화시켜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정도를 가지고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먼저 판례가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고 나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하여 보기로 한다.

##### 1. 판례의 구체적인 불인정 기준

###### (1) 현대의학상 그 원인 및 과로와의 관련이 입증되지 않은 질병

###### 1) 위암

(i)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사망은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4740 판결).

(ii) 교사가 국민학교에 부임하여 6학년 담임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였고 부임한 3개월 후에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상관정을 받았는데 그 후 1개월여 뒤에 위암진단을 받아 23일만에 사망한 경우에 과로가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

---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2조, 제111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근로자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283 판결)”

시켜서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 바로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295 판결)

## 2) 폐암

김포세관 입국검사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와 무환수입물품의 심사업무를 담당하던 기간동안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망인이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경우에 폐암의 확실한 원인은 현대의학상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믿어지고 그외 석면 공해물질 등도 가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폐암이 전이상태로 발견된 때에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또 폐암이 코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문헌상의 보고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3.22. 선고 94누408 판결)

## 3) 버거씨병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버거씨병이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8545 판결).

## 4) 급성골수성 백혈병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바이러스에의 감염, 방사선이나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이 유인으로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코로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거나,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렴이나 장출혈 등의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그의 기존 질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유발되어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망인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의 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그의 백혈병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 (2) 청장년급사증후군

## 1) 사인이 불분명하고 단순한 경비업무인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때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 달리 망인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그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가사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인 경비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3287 판결).

## 2) 사인이 불분명하고 과로로 볼 증거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 열처리반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야간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평소의 업무내용이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도 아니며 위 근로자가 당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위 근로자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그것이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3303 판결).

## 3)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1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과로로 볼 수 없는 경우

망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특별한 병력이나 질환이 없었으며, 특히 1996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들었고, 사망 1개월 전에는 장기파업으로 작업에 임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전 설날 연휴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위 망인이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일반적인 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8.9.11. 선고 98두9257 판결).

## 4)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가 그 소속 회사가 하도급 받은 수 개의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작업하다가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



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3) 업무상의 과로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1) 피재자에게 관상동맥경화 등 기초질환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 사건에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규모나 담당 업무의 성격, 나이, 평소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하거나 이를 촉진시킬 정도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491 판결).

2) 피재자의 작업환경,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내용이나 강도 등으로 볼 때에는 이 업무가 통상적인 정도를 넘지 아니하며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밝혀지지 않은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요인이 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전날의 회식 당시 특별히 과음을 하게 할만한 사정이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누4586 판결).

3) 피재자가 전산담당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전산담당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사망 3개월 전부터 사망하기까지는 시간외 근무나 심야근무를 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량이 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운동 자체가 혈압 상승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압박감을 호소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고혈압과 뇌출혈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3.25. 선고 96누15954 판결).

4) 피재자와 같이 당뇨와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이 과로를 하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질병이 악화되어 뇌경색증을 초래할 수 있는데, 피재자의 토지보상관계 업무의 처리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다발성 뇌경색을 발병시키거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뇌경색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발성 뇌경색을 일으킬 만큼 과로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

는지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누14142 판결).

## 2. 판례의 경향에 대한 검토

판례의 경향에 대한 검토는 위암 등의 경우처럼 발병원인 및 과로와의 관련이 의학상 입증되지 않은 질병과 이른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두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누어서 하여 보기로 한다.

판례는 위암 등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에 관하여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판단기준으로 ‘현대 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속히 악화되는 것이라고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망의 원인이 이러한 범주의 질병에서 비롯되면 판례는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기존질병의 급속한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상의 경험법칙에 입각한 일반 주장을 배척하고 과로와의 인과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문이 든다. 판례는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입증의 정도에 대한 일반기준으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라는 원칙을 한결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위암 등 질병에 관하여 판례는 ‘현대 의학상’ 그 발병원인과 과로와의 관련이 입증되지 않은 것을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인과관계 판단에서 반드시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요구하지 않는 판례의 기본원칙과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첫째 의문이다.<sup>8)</sup> 또한 판례가 위암과 폐암 등의 질병 사례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295 판결)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망인이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경우”(대법원 1994.3.22. 선고 94누408 판결)라고 구체적으로 과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위암 및 폐암의 발병원인과 과로와의 관련이 의학상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은 과로를 공동원인 내지 유력원인으로 판단하여 간암 및 폐질환 등의 질병에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의 일반 경향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지 하는 점이 두 번째 의문이다.<sup>9)</sup>

8) 이홍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서울대학교 법학 : 제40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1999), 204쪽.

판례는 이른바 청장년급사증후군에 대하여 과로사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상 과로의 증거가 없는 상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의 역점은 역시 불분명한 사인보다는 업무상 과로로 볼 수 없는 사정에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판례는 “가사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경비업무인 점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3287 판결)” “설사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그것이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3303 판결)”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판례는 사인이 불분명한 구체적 사례에서 망인의 업무가 각각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인 경비업무(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3287 판결)” “1주일 단위의 주야간 교대근무(대법원 1998.9.11. 선고 98두9257 판결)” “회사 열처리반의 야간근무(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3303 판결)”인 점에 비추어 업무의 성질상 과로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객관적 판단을 함으로써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로의 정도를 업무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 선형적으로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은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당 근로자의 상태에 따른 주관적 구체적 판단)하는 판례의 일반기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판례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구체적 사례에서 그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례의 일반기준에 미흡한 심리미진의 태도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과로사의 인정기준에 대한 판례의 전체적 경향은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 일차적 판단기준으로 하고 그 인과관계가

- 
- 9) 과로사의 인정에 관한 법률적 문제의 특징에 대하여 “과로사의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은 통상의 의료보험영역인가, 혹은 근로기준법 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의 대상인가 그리고 비용부담을 사용자만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노사쌍방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경계유동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과로사가 업무상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주목된다. 김형배, **노동법** : 제12판, 박영사(2000), 380쪽.

인정되면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문제의 핵심은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인데, 판례는 통일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사안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친 경우에는 과로를 사망의 공동원인으로 파악하고 또한 과로가 기존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경우에는 과로를 사망의 상대적 유력원인으로 파악하는 이분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인과관계의 입증의 정도에 대하여 판례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입증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개연성만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이고 또한 판례는 입증부담을 과로사를 주장하는 측에 지우고 있지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위암이나 폐암 등 질병에 대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원인과 과로와의 관련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입장은 반드시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백하게 요구하지 않는 판례의 기본원칙과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위암 및 폐암 등 질병의 경우에 판례는 구체적으로 과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학상의 입증 결여를 근거로 과로사를 부인하는 것은 과로를 공동원인 내지 유력원인으로 판단하여 간암 및 폐질환 등의 질병에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의 일반 경향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아가 과로의 정도를 경미직 등 업무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 선형적으로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주관적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판례의 일반기준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판례는 일반근로자의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경우 그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먼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과로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비록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과로사를 인정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례가 그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공무원의 패혈증과 그 직접 사인이 불분명한 공무원의 청장년급사증후군에 대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과로사로 인정한 것은 일반 근로자의 판단기준과는 형평성을 결여한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의 태도라고 여겨진다.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판례의 이례적인 태도는 비슷한 사안의 경우 과로사를 인정받지 못하던 일반근로자에게 그 판단기준을 발전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서울 지방법원이 과로로 인한 통근재해를 인정한 것은 대법원과는 그 입장을 달리한 전향적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기술 및 기계의 도입이나 신물질의 사용 등으로 초래된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는 새로운 유해물질에 폭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원인모를 질병에 이환되거나 기초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망이다. 그러므로 현재 관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로사의 사회보장법적 인과관계론의 구성과 과로사 방지의 관점에서 업무상 과로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추급이론 구성이 앞으로 연구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Abstract>

##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Test for Death from Overexertion("Karoshi")

Lee, Heung-Jae\*

This Article attempts to review the initial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s test for worker's death from overexertion(Karoshi), and to suggest reasonable judicial test for Karoshi to effectively guarantee worker's right to receive 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Recently, in Korea, Karoshi including syndrome of adults' sudden death tend towards increasing under rapidly changing industrial workplace-environment caused by globalization and restructuring.

The author clarifies that Karoshi is 'a third type of occupational accident' having dual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occupational illnesses, and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distinguish worker's personal accident of private life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occupational accident resulting from employment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rough analyzing relevantly the test for Karoshi during 1990-2000 in the light of the statutory goal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the author points out the coherent tendency of the test for Karoshi as follows : In order to meet requirements for Karoshi "resulting from employment" in the IACIA (Art. 4, 1.), its "being caused by duties" which means that the death has a proper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worker's duties should be decisive standard for Karoshi. Judicial test seems to interpret meaning of 'proper casual relationship' of Karoshi to be 'joint cause' or 'relative dominant cause' according to two categories of its factors. However, in case of stomach cancer or lung cancer, judicial test does not recognize it as Karoshi because of being unable to prove its casual

---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ionship with excessively heavy duties based on the latest medical knowledge about it. Judicial test also does not recognize syndrome of adults' sudden death as Karoshi because of unclear cause of the death.

The author argues that judicial test about stomach cancer or lung cancer is contradicted to general standard of the casual relationship which does not demand the proof of clear medical cause. He also contends that the test about syndrome of adults' sudden death makes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public employee and general worker. Finally he underscores that two promising issues of Karoshi should be resolved ; first, to compose the appropriate casual relationship theory based on the goal of the social security law and second, to study legal theory of calling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Karoshi.